



해외건설

BRIEF

2023 세법 개정에 따른 해외건설업계 영향

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 I. 2023 세법 개정 방향과 취지
- II. 주요 내용
- III. 기대 효과

I 2023 세법 개정 방향과 취지

2023.7.27.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건설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2개의 중요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및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를,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건설 기업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현지법인의 손금 산입 특례와 각각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해외건설 업계가 오랜 시간 바라왔던 조치이다.

해외건설협회는 수주플랫폼 회의, 임원간담회, 부서장간담회 및 실무자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해외건설 업계와 상시 교류하며 애로와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 국회 등에 지속해서 개선 건의를 해온 바 있다.

『2023 세법개정안』에는 앞서 언급한 소득·법인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그 후속 조치로 2023.12.31.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고, 2024.2.29.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해외 오지 등의 현장에서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해외건설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강화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해외건설 자회사(현지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치를 통해, 회수불능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토록 하여 우리 건설기업의 과도한 납세의무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덜어 주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세 불평등의 해소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II

주요 내용

가. 소득세법 시행령

우리 해외건설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과 함께 주요 4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세계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해외건설 시장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해외건설 현장은 주로 사막 등 오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주처 요청 및 현장 일정에 따른 잦은 근무 시간 연장, 과거에 비해 국내 소득 대비 해외 증가분이 크지 않는 등의 영향으로 특히 젊은 층의 현장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주 확대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을 개선하여 국내 건설인력의 해외 현장 진출을 확대하고, 현장관리에 대한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교육책의 일환으로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즉,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종전 월 300만원(2012.4.13 개정)에서 월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2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된 이후 약 12년 만에 재조정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개정(2024.2.29)이 이루어진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

< 표 1. 해외건설 현장근로자 비과세 확대 이력 >

시기	비과세 금액	시기	비과세 금액
'76.1.1	월 50만원	'12.2.2	월 200만원
'95.6.30	월 100만원	'12.4.13	월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00.1.1	월 150만원	'19.2.12	월 300만원 * 설계 및 감리 업무 포함
'06.2.9	월 100만원	'24.2.29	월 500만원
'09.2.4	월 150만원		

실제로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월 500만원의 비과세를 가정하여 단순 계산했을 때 연봉 1억원의 근로자는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200만원이지만 해외 현장 근로 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연봉 1.3억원 근로자의 경우도 소득세가 약 670만원정도만 발생하게 된다.

최근 해외건설 기업의 연봉 추이를 보았을 때, 해외 현장 근로자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 현장 기피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2. 해외건설 현장근로자 비과세 단순 비교 계산 >

(단위: 원)

구분	국내현장	해외현장				
		연봉 1.3억원		연봉 1억원		
		비과세 300만원	비과세 500만원	비과세 300만원	비과세 500만원	
총소득(a)	100,000,000	130,000,000	130,000,000	100,000,000	100,000,000	
비과세(b)	4,800,000	36,000,000	60,000,000	36,000,000	60,000,000	
총급여(c=a-b)	95,200,000	94,000,000	70,000,000	64,000,000	40,000,000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4,510,000	14,450,000	13,250,000	12,950,000	11,750,000
	본인	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국민연금	2,986,200	2,986,200	2,986,200	2,986,200	2,986,200
	건강보험(d)	3,836,280				
	고용보험(e)	856,800	846,000	630,000	576,000	360,000
표준과세	73,010,720	74,217,800	51,633,800	45,987,800	23,403,800	
산출세액	12,302,573	12,592,272	7,172,112	5,817,072	396,912	
근로소득 세액공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결정세액(f)	11,802,573	12,092,272	6,672,112	5,317,072	-103,088	
지방소득세(g)	1,180,257	1,209,227	667,211	531,707	-10,309	
실질소득(a-d-e-f-g)	82,324,090	115,852,501	122,030,677	93,575,221	99,753,397	

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2010년대 중반 우리 건설사 간 과당경쟁 등으로 특히 중동지역에서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주요 건설사들의 어닝쇼크가 해외건설 업계를 강타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손실 부분을 재무제표상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우리 건설사들을 괴롭혀오고 있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에서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대부분 현지법인이나 지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데, 해외 지사의 경우에는 손실 발생 시 바로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지법인 설립이 의무적인 국가(사우디 등)의 경우, 자본이 잠식된 자회사에 대여금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던 현장들에서의 손실이 제때 손금으로 산입되지 못했던 것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 손실을 충당금으로 쌓으면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현지법인에 대여했던 대여금 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법인세까지도 지금까지 납부해오고 있었다. 현지법인 청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세금까지도 우리 건설사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것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현지법인에 지급했었던 본사 대여금 중 자본잠식으로 회수 기일이 5년 이상 경과된 미회수 대여금과 그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년 연간 합계 500~600억원 이상의 법인세 절감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우리 해외건설 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해외 현지법인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면서, 5년 이상 회수되지 못하였고, 자본잠식 등으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여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조건 충족 시 올해부터)의 법인세 산출을 위한 손금에 10%씩 10년간 산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파산·청산이 어려운 현지법인에 대한 손실로 인해 부당한 법인세 부과를 개선함에 따라서 해외건설 기업들의 과도한 납세의무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과세 불평등이 해소됨에 따라 수주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III 기대 효과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업계로부터 수주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접수한 이후, 국토부·기재부 등 해당 부처와 국회 등에 이러한 내용을 즉각 공유하고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기업과의 소통의 장을 주선했다. 또한, 건의문도 제출하는 등 기업들의 목소리를 계속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였다.

모두 이러한 건의 사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정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하여 실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었다. 그러나 해외 현장 근로 여건의 변화와 그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닌 원래 부과되지 않았어야 할 세금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함께 꾸준히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한 결과 결국 세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해외건설 수주는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해외건설 기업들이 최일선에서 수주에 성공해야 최종적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불 시대를 넘어 2조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해외건설 기업의 지속적인 수주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 기업들이 튼튼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젊고 능력 있는 세대의 시장 참여를 이끌어 낼 때 지속 가능한 해외건설 시장 선두주자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바람이 이번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기업은 물론 정부, 국회와 협회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 낸 성과인 만큼, 이것이 우리 해외건설이 연간 수주 500억불 시대를 향해 다시 뻗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